

『금산홍삼음료 품질표준화 관리 사업』 업체 모집 공고

금산홍삼음료 표준제조공정을 통해 품질 기준을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금산홍삼음료 품질표준화 관리 사업」 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일

[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

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: 금산홍삼음료 품질표준화 관리 사업
- 나. 사업목적: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
- 다. 사업기간: 2026년 1월 ~ 12월
- 라. 사업대상: 금산군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(홍삼음료에 한함)
- 마. 지원내용: 무상검사(6개월 단위), 표준제조공정 준수업체 지정서, 제품기록서 및 인삼 효능 홍보물 제공

2. 신청 접수 및 문의

- 가. 접수 기간: 2026. 2. 2.(월) ~ 2026. 2. 20(금)
- 나. 접수 방법: 방문 접수
 - 제출처: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(1층)
- 다. 관련 문의: 산업진흥팀 (☎ 041-750-1622)

3. 제출 서류

- 가. 참여 신청서 및 표준제조공정 준수 서약서 각 1부
- 나.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
- 다. 지방세 납입확인증(최근 3년)
- 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- 마. 품질검사 분석 시료 5개 (예, 홍삼파우치 5팩)

4. 선정업체 품질기준

- 가. 선정(최초 지정) 기준
 - 홍삼음료 표준제조공정 준수 서약을 완료하고, 품질검사 결과(유효성분 및 안전성)가 ‘금산홍삼음료 품질기준’에 적합한 업체
 - 적합 업체에 한하여 ‘표준제조공정 준수업체 지정서’ 및 QR코드 발급
- 나. 부적합 처리 및 재신청
 -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, 결과 통보 후 재신청(재검사) 가능
 - 재신청 시 품질검사용 시료를 재제출하여야 함
- 다. 지정 유효기간 및 연장(재인증)
 - 준수업체 지정서 유효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함
 - 유효기간 연장 시, 만료일 30일 전까지 품질검사(재인증) 추진
 -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미연장: 지정서 및 홍보물 반납
 - 재인증 결과 적합 시 유효기간 연장(6개월)
- 라. 기타
 - 본 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항목 중 ‘식품위생법’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항목과 동일한 경우 같음할 수 있음(단, 6개월 내 성적서)

- 붙임 1.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 2. 홍삼음료 표준제조공정 준수 서약서 1부
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끝

<참고사항>

금산홍삼음료 품질기준 및 제조공정 가이드라인

항목	식품공전	금산홍삼음료	검사필증
진세노사이드 Rb1, Rg1, Rg3(s)의 합	인삼·홍삼성분 확인	0.1mg/mL 이상	
세균수	n=5, c=1, m=100, M=1,000	n=5, c=1, m=100, M=1,000	
대장균군	n=5, c=1, m=0, M=10	n=5, c=1, m=0, M=10	
잔류농약	-	수삼 기준치 이내 (그외 성분 0.01mg/kg)	

공정	세부공정	참고내용
원재료	홍삼(동체 50%이상)	· 4년근 이상의 추출용 홍삼을 사용 · 동체의 비율은 50%이상 함유
투입	원재료의 20배량 물	· 홍삼 원료의 20배수 물을 넣음 (홍삼 600g 당 물 12L)
추출	85℃, 18시간	· 추출은 85℃에서 18시간 추출
이송		· 홍삼추출액은 여과 후 살균기 이송
살균	100℃, 30분	· 살균은 100℃에서 30분이상
충진	80℃이상	· 충진은 80℃이상에서 균질화된 상태
포장		· 포장기에서 포장